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718

제안연월일: 2021년 9월 8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현행 조례 제13조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한 운영세칙임에도 불구하고, 동 조 례안은 이를 삭제하였는바, 그 필요성에 따라 운영세칙을 안 제12조 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신설함(안 제12조 신설).

3. **참고사항**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」를 따르고그의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<u>〈삭 제〉</u>	
	<u>〈신 설〉</u>	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"를 "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교육재정안정화기금"을 "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"으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"교육재정안정화기금"을 "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 제4조를 삭제하고, 제3조를 제4조로 하며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3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 운용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3조)의 제목 "(기금의 조성)"을 "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용도)"로 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3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조에 따른 기금"을 "재정안 정화 계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"교육비특별회계"를 "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(이하 "교육비특별회계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제2호 중", 기금운용심의위원회"를 "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

회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
 - 가. 보통교부금(다만,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 한다)
 - 나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
- 다. 자체수입
- 2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
- 3.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 액
-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 - 1.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
 - 2.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
 - 3.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(BTL)에 충당할 경우
- 4.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의하여"를 "따라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워을 둔다.
 - 1. 기금운용관 : 기획조정실장
 - 2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사무관

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"(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"을 "(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기금을"을 "교육감은 기금을"로, "교육감 소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"을 "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하고,

같은 조 제4항 및 제 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 제6조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"을 "위원"으로 하고, "으로한다"를 "이 된다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: 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
- 2. 위촉직 위원: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"를 "있다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"개의"를 "개의(開議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심의 안건"을 "심의 안건"으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예산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"를 "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"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는 제11조로 하고 제11조(종전의 제12조) 중 "시행일로부터 5년으"를 "2024년 12월 31일까지"로 한다.

제13조는 제12조로 하고 제14조는 삭제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.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